• 21세기 미래문화도시 • 더불어 행복도시 • 사람중심 열린도시

Yeonsu Better life

연수구보

■구정방향■

발행·편집인:연수구청장 / 발행처:인천광역시 연수구 / 주소: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우)21967 ☎ 749-7392 / FAX 749-7399

구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 관 의 장

부록 제1286호 2021. 12. 27.(월)

【공 고】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1-1759호(동춘2구역 도시개발사업 환지처분 공고) ····· 1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1-1762호(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3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1-1769호(인천광역시 연수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외 1건 입법예고) ····· 7

【고 시】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시 제2021-122호(도시계획시설(도로:중2-651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54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시 제2021-125호(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65

회람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1-1759호

동춘2구역 도시개발사업 환지처분 공고

동춘2구역 도시개발사업 조합에서 시행하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210번지 일원『동춘2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도시개발법」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지처분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21. 12. 27.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1. 사 업 명 : 동춘2구역 도시개발사업
2.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210 일원
3. 시 행 면 적 : 228,944.7㎡ (69,256坪)
4. 사 업 기 간 : 2009. 4. 6 ~ 2021.12.27.
5. 시 행 자 : 동춘2구역 도시개발사업 조합 (조합장 김진학)
6. 환지처분일 : 2021년 12월 27일
7. 조합공고문 : “별첨”

동춘2공고 제2021-103호

동춘2구역 도시개발사업 환지처분 공고

1.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5-62(2005.4.20.)호로 구역지정 고시되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1-442(2021.10.25.)호로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동춘2구역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어 「도시개발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환지처분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동춘2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보이고,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1. 12. 27.

동춘2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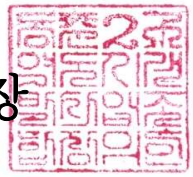

가. 사 업 명 : 동춘2구역 도시개발사업
나.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봉재산로 8(동춘동 210) 일원
다. 시 행 면 적 : 228,944.7㎡
라. 시 행 자 : 동춘2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 김진학
마. 사 업 기 간 : 실시계획 인가일(2009.04.06 ~ 환지처분일(2021.12.27)
바. 사 업 비 : 80,498,000천원
사. 환지처분일 : 2021년 12월 27일
아. 사업비 정산내역 및 체비지 매각대금과 보조금, 그 밖에 사업비의 재원별 내역

구 분		수 입	지 출	비 고
계		108,386,952,000원	108,386,952,000원	
일반환지 (청산금)	청산금징수	7,896,534,500원		
	청산금교부		3,070,631,000원	
금 전 청 산			24,818,321,000원	
체비지 매각 금액		86,135,328,000원		
기타 회계 전입금		14,355,089,500원		
사 업 비			80,498,000,000원	

자. 기타사항
- 환지처분공고로 종전의 토지는 환지처분 내역과 같이 변경되며 도시개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효과가 발생됩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동춘2구역 도시개발사업 조합(032-815-026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1-1762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 년 12 월 24 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사위원회 관련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사항(2022. 1. 13. 시행)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복된 사항을 정리하여 위원회의 효율적 구성과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연수구 지방의회 추천 위원 의무적 구성 규정 삭제(안 제4조제2항 단서)

○ 상위법령[지방공무원법(제7조), 같은 법 시행령(제9조의2)]에 규정된 내용과 중복되거나 운영상 한계가 발생될 수 있는 규정 삭제 및 변경(안 제4조 전반)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동춘동 923-5번지)

2) 연 락 처 : 전화(032-749-7172), 팩스(032-749-7159)

※ 홈페이지 : http://www.yeonsu.go.kr/

라. 제출서식

개 정 (안)	사 유(구체적으로)
	(필요시 관련 근거자료 첨부)

4. 첨부자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신 · 구조문 대비표

[첨부자료] 개정(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구성) ①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구성한다.

②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국장급 공무원과 법 제7조제3항과 제5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으로 하되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2와 제9조의4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 1. 13.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위촉된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첨부자료]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구성) ①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6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제5항 각 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의 각 국장, 보건소장, 5급 이상 여성공무원 중 2명, 법 제7조5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10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에는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에서 추천한 위원 2명과 여성위원 4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구성) ①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구성한다. ②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국장급 공무원과 법 제7조제3항과 제5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으로 하되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2와 제9조의4에 따른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1-1769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외 1건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및 규정을 전부개정 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2월 27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1. 자치법규명

❍ 인천광역시 연수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인천광역시 연수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및 「주민조례발인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신설 및 삭제하고,

❍ 부의안건 공고, 사전심사 및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정을 정비하여 원활한 법제사무 처리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 연수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인천광역시 연수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규정 신설

-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규정 정비
- 부의안건 공고, 사전심사 및 조례 · 규칙심의회 운영 규정 정비

○ 인천광역시 연수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규정 및 서식 삭제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12. 29.(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사항

이 조례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연수구청 기획예산실(☎749-7102, 황혜련)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서식

개 정 (안)	사 유(구체적으로)
	(필요시 관련 근거자료 첨부)

마. 보내실 곳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 연 락 처 : 전화 749-7102 / FAX 749-7079

◯ E - mail : rath0610@korea.kr

◯ 홈페이지 : http://www.yeonsu.go.kr/

바. 첨부

◯ 인천광역시 연수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 인천광역시 연수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1부.

인천광역시 연수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행정규칙 등의 심사 및 법령질의에 관한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법”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이하 “입법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입법”을 말한다.
2. “자치법규”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3. “행정규칙”이란 법령·조례의 시행이나 행정사무처리 등과 관련하여 발령하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훈령과 예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자치법규, 행정규칙 또는 질의문서 등의 입법 또는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5. “심사”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자치법규, 행정규칙 또는 질의문서 등에 대하여 법제업무담당 부서장이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6. “질의”란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자치법규·행정규칙 등에 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요구하는 문의를 말한다.

7. “회시”란 제5호의 질의에 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말한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법제사무 처리에 대하여 다른 규칙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자치법규 입법안 작성 및 심사

제4조(입법안 작성 및 사전심사)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입법안을 작성할 때 어려운 숙어, 지나치게 압축된 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용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작성한 자치법규 입법안에 대해 법제업무담당 부서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전심사는 제8조의 법제심사에 준하여 실시한다.

제5조(방침결정 및 사전협의)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전심사를 거친 입법안을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방침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방침결재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법이유
2. 주요내용
3. 신·구조문 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 한함)

4. 관계법령 발췌사항

5. 비용추계서(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에 한함)

6. 그 밖에 필요한 자료

③ 주관부서의 장은 작성하고자 하는 자치법규 입법안이 법령이나 다른 규정 등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의 협조·인가·승인·협의 등이 필요한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관계 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입법예고 전에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행정규제심사

2. 부패영향평가

3. 성별영향분석평가

4. 예산조치사항 및 비용추계 자료 작성

5.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부서

④ 주관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관계 부서와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작성하는 입법심사안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조정 또는 합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입법예고)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조례 제6조에 따른 입법예고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실시하고,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결과요약서를 법제업무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이 입법조례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입법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예고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법제업무담당 부서장에게 사전 협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법제업무담당 부서장은 제2항에 따른 주관부서의 협의 신청 사항에 대

하여 검토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협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입법안 심사요청)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가 완료된 자치법규 입법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업무담당 부서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입법안 방침결재 사본
2. 입법안(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 포함)
3. 입법예고 결과 요약 내용
4. 제5조제3항 각 호에 따른 부서협의 결과
5.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

② 다른 기관의 승인·인가를 입법의 법적 요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승인·인가문의 사본을, 상급기관으로부터 시달된 표준안, 입법지침, 지시공문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법제심사) ① 법제업무담당 부서장은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제출된 입법안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심사한다.

1. 형식적 심사: 구비서류와 법규체제 및 용어의 적합성, 사전협의 및 선행절차 이행 여부, 입법예고 여부와 그 반영 등
2. 실질적 심사: 입법의 필요성, 상위법령에의 저촉 여부, 입법 선례와의 비교, 다른 자치법규와의 균형, 실효성·타당성이 없는 조항의 정리 등

② 법제업무담당 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입법안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의 장에게 입법안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법제업무담당 부서장은 제2항에 따른 수정요구를 주관부서의 장이 수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제업무담당 부서장은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충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입법안을 반려하거나 기한을 정하여 보완 요구할 수 있다.

1. 입법안의 내용이 법령에 명백히 저촉되는 경우
2. 제5조에 따른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3. 사전협의 없이 입법예고를 하지 않거나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한 경우
4. 자치법규의 규정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정비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입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입법안이 수정되고,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일 경우 「행정절차법」제41조제4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통보 및 입법안 확정) 법제업무담당 부서장은 입법안에 대한 법제심사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법제심사를 마친 입법안에 대하여 구청장의 최종결재를 받아 입법안을 확정한 후 심의회에 상정 의뢰하여야 한다.

제10조(지정입법) ① 법제업무담당 부서장은 상위법령 개정 등의 사유로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의 입법이 필요한 경우로서 주관부서의 장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입법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을 입법대상으로 지정하고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적극 입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제업무담당 부서장이 지정하는 기일 내에 정비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행정규칙 등의 심사

제11조(심사대상) ①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행정규칙 입법안은 법제업무담당 부서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행정규칙 외에도 고시·공고문이나 그 밖에 법률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최종결재 이전에 법제업무담당 부서장의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심사절차 등) ① 주관부서에서는 심사대상 문서에 대하여 법제업무담당 부서장의 사전 심사를 거쳐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법제업무담당 부서장의 심사자료 제시, 보충설명 등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행정규칙 등의 심사 기준 및 방법은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제4장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검토 등

제13조(의견 검토 등)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이하 이 장에서 “규칙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서를 받은 소관부서(규칙조례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검토 결과를 작성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규칙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검토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검토 결과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관부서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의 정비안을 작성하여 법제업무 담당부서에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전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제출서 및 검토 결과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③ 제출된 의견에 대한 소관부서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부서장과 법제업무담당 부서장이 협의하여 소관부서를 결정한다.

제14조(결과 통보) 구청장은 의견제출인의 동의를 받았을 경우 규칙조례 제7조1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통보하되, 문서 또는 「전자정부법」 제7조에 따른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다.

제15조(의견 제출의 관리) ① 소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내역을 법제업무담당 부서에 알려야 한다.

1. 규칙조례 제7조에 따라 의견을 검토하고 결과를 통보하였을 경우
2. 규칙조례 제6조에 따라 다른 기관에 의견을 이송하였을 경우

② 법제업무담당 부서장은 소관부서로부터 받은 제1항 각 호에 대한 사항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5장 조례·규칙심의회

제16조(구성) ① 심의회의 의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의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② 심의회 위원은 본청의 각 국장, 보건소장으로 한다.

제17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구청장이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
2. 구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다만, 구청장이 구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은 제외한다)
3. 구청장이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하는 규칙안
4. 구청장이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하는 행정규칙안
5. 예산안·결산안, 그 밖에 구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구청장이 심의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6. 심의회에 회부된 공무국외여행심사에 관한 사항

7. 다른 조례나 규칙 등에서 심의회 심의대상으로 규정한 사항

8. 그 밖에 구청장이 심의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8조(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소집하며 이를 주재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다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다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따른 위원 순으로 회의를 주재한다.

제19조(회의) ① 심의회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례회의는 매월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상정할 의안이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회의 심의의결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제20조(의안제출) ① 의안은 주관부서에서 입법안 확정에 대한 구청장의 결재를 얻은 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법제업무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주관부서에서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에 상정할 의안은 심의회 개최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법제업무담당 부서장은 제출된 의안을 검토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상정의안 목록을 작성하고, 상정일을 확정하여 심의회 개최 3일전까지 의장, 부의장 및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합의) 심의회에 상정할 의안으로서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계 부서간에 합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합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22조(제안설명) 의안을 제출한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안의 취지 및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구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의 경우에도 주관부서의 장이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단, 주관부서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관업무 담당 주사가 대신하여 설명할 수 있다.

제23조(보충설명) 의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작성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배석 및 의견청취) ① 심의회에는 법제업무담당 부서장이 배석한다.

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속기관장, 출장소장 및 관계공무원 등을 심의회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4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5조(대리 출석) 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국(소, 실)의 차순위 관계공무원이 대리 출석할 수 있다.

② 대리 출석한 차순위 관계공무원은 관계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26조(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법제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입법안의 처리절차 등

제27조(조례안 등의 처리절차) ① 법제업무담당 부서장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안을 포함한 부의안건을 공고한 후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공포안을 접수한 법제업무담당 부서장은 즉시 주관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구의회에서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인천광역시장에게 사전보고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구의회 의결 조례공포안을 통보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법제업무담당 부서장과 협의를 거쳐 공포 또는 재의요구에 대한 구청장의 방침 결정을 받아야 한다.

④ 법제업무담당 부서장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친 규칙안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장에게 사전보고 하여야 한다.

제28조(행정규칙의 처리절차) 법제업무담당 부서장은 심의회 의결을 거친 행정규칙안에 대하여 구청장의 최종결재를 받아 발령하여야 한다.

제7장 공포 및 시행

제29조(공포안 작성) ① 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조례는 법제업무담당 부서장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포안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

1. 공포전문
2. 공포문

②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규칙 사전보고안에 대하여 기한 내 의견회신이 없거나, 이의 없음을 통보받은 법제업무담당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 다만, 수정내용을 통보받은 경

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이 수정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 법제업무담당 부서장에게 통보한 후 수정된 규칙안에 대하여 공포한다.

1. 공포전문

2. 공포문

3. 변경통보문(변경통보의 경우에 한함)

제30조(공포 및 발령) ① 법제업무담당 부서장은 구청장의 결재를 받은 조례, 규칙 공포문 원안에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② 법제업무담당 부서장은 공포 일련번호를 부여한 직후에 공포문을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게재하고, 공보업무 담당부서에 송부하여 구보에 게재하도록 하며, 동시에 주관부서의 장에게도 통보한다.

③ 행정규칙은 발령문을 작성하고,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발령한다.

제31조(주관부서 조치사항)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포된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 이전에 관련공무원의 교육, 공포내용에 대한 관련 소속기관의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을 수시 확인하여 잘못된 부분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법제업무담당 부서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8장 법령 및 자치법규 질의·회시

제32조(질의방법) ① 법령 및 자치법규(이하 이 장에서 “법령등”이라 한다)의 집행과 관련하여 주관부서의 장이 법제업무담당 부서장이나 소관 상급기관에 질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질의하여야 한다.

1. 질의의 요지

2. 법령해석의 대상이 되는 해당 법령등의 조문 및 관련 법령등

3. 대립되는 의견(갑설, 을설 등으로 구분) 및 그 이유

4. 제3호에 대하여 질의자가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의견

5. 질의에 관련된 법령등 발췌문 및 그 밖의 참고 자료

②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법제업무담당 부서장이 참고자료의 요구나 보충설명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직속기관장, 출장소장 및 동장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에게 질의하여야 한다.

제33조(질의대상) 주관부서의 장이 법제업무담당 부서장에게 질의할 수 있는 법령해석 사항은 다음 각 호에 한한다.

1. 두개 부서 이상이 관련되어 이론이 대립되는 자치법규 해석

2. 주관부서 내에서 이론이 대립되는 자치법규 해석

제34조(질의문 반려) 법제업무담당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의문은 반려할 수 있다.

1. 제30조제1항에 정한 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질의

2. 법령등에 명백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규정을 연구·검토하지 않고 질의한 사항

3. 법령해석과 관계없는 구체적인 사실문제에 대한 해결방법·대책 및 처리절차 등에 대한 질의

4. 문제의 발생이 예상되거나 발생된 문제 및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한 수습책으로 질의하는 사항

5. 민원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안으로 소속기관에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질의하는 책임회피적인 질의

6. 이미 법제업무담당 부서장의 회시가 있었던 사항에 관한 질의

7. 상급기관장의 회시에 관한 단순한 재질의

8. 행정심판위원회 재결결과나 재판에 관한 질의

9. 구비서류 보완이나 보충설명 요구에 불응한 질의

10.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외국 법령에 관한 질의

11. 그 밖에 소관업무와 관계없는 사항에 관한 질의

제35조(외부기관 질의) ① 주관부서의 장이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문변호사에게 법령해석에 관한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나 소관 상급기관의 장 또는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법령해석기관의 장에게 질의하고자 할 때에는 법제업무담당 부서장의 사전심사 및 협조를 받아야 한다.

② 법제업무담당 부서장이 외부기관 질의대상 사항이 아니라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요구서류에 의견을 첨부하여 반려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의 장의 제1항에 따른 자문 또는 질의에 대한 회시를 받 았을 때에는 그 회시내용을 법제업무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6조(회시) 법제업무담당 부서장은 주관부서의 장의 질의에 대하여 제32조의 반려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의견을 회시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법제업무담당 부서장의 회시를 참고하여 최종해석을 확정한다.

제9장 보칙

제37조(시행세칙) 그 밖에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 서식]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 조례(규칙)(안) 입법예고 (제정의 경우)

※ 전부개정 :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규칙) 전부개정조례(규칙)(안) 입법예고
일부개정 :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규칙) 일부개정조례(규칙)(안) 입법예고
폐 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규칙) 폐지조례(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 조례(규칙)」을 제정(개정, 폐지)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청 장

1. 제정(개정, 폐지)이유
(정책의 추진방향, 기본적인 개선방향 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작성)

2. 주요내용
○ 조례(규칙) 제정(개정·폐지)안의 주요 내용 작성

3. 의견제출

이 조례(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 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참조 : ○○○실·과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실·과(전화 : ○○○-○○○○~○, FAX : ○○○-○○○○, E-mail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안)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홈페이지(http://www.yeonsu.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4. 공청회 개최계획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만 작성)

가. 개최일시 : 20 년 월 일 시 분
나. 개최장소 :
다. 공청사항
  1)
  2)
  3)
라. 발언자 수 : 인
마. 발언신청

공청사항에 대하여 공청회에 참석, 의견 발표를 원하시는 분은 20 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참조 : ○○○실·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발언하실 분을 선정하여 통지하겠습니다.

(1) 공청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의견)
(2) 의견 발표자의 주소, 성명(단체명 또는 법인명 및 단체 또는 법인에서의 직위)

[별지 제2호 서식]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 결과

<table>
<tr><th colspan="2">검 토 구 분</th><th>有</th><th>無</th></tr>
<tr><td>검 토 사 항</td><td>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규제개혁위,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td><td></td><td></td></tr>
<tr><th colspan="4">실·과·소·동별 의견수렴 결과</th></tr>
<tr><th>수 렴 기 간</th><th>제 출 의 견</th><th colspan="2">검 토 내 용</th></tr>
<tr><td>○ 기 간
- ~
○ 내 용
- 의견수렴</td><td></td><td colspan="2"></td></tr>
<tr><th colspan="4">입 법 예 고 결 과</th></tr>
<tr><th>예 고 기 간</th><th>제 출 의 견</th><th colspan="2">검 토 내 용</th></tr>
<tr><td>○ 기 간
- ~
○ 방 법
- 구보게재 및 기타</td><td></td><td colspan="2"></td></tr>
</table>

☞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 결과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표기하고 내용이 많을 경우 각각(의견수렴, 입법예고)의 서식으로 「별지작성」

☞ 관계 실·과·소·동 간의 합의 내용 기재, 특히 법령, 조례, 규칙, 예산, 규제 등에 관한 필요적 합의부서는 반드시 합의하도록 하고, 합의가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미 합의된 사실을 적시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함.

[별지 제3호 서식]

입법예고기간 조정(생략·단축)사유서

제 명		주관부서	
분 류	1. ( ) 입법내용이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 )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3. ( )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 )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5. ( ) 입법내용의 성질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입법예고기간 조정(생략·단축)의 구체적 사유

○ (서술식으로 작성)

□ 향후 일정

○ 관련부서 협의 : 20 . . . ~ . .

○ 입법예고 : 20 . . . ~ . .

○ 법제심사·규제개혁위원회 심의 : 20 . . . ~ . .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 . . .

○○○○실·과장 ○ ○ ○

[별지 제4호 서식]

입법예고기간 조정(생략·단축)협의 결과통보서

□ 제명

○ (자치법규의 제명을 기재)

□ 입법예고기간 조정(생략·단축)사유

○ 조정사유
- (서술식으로 작성)

○ 입법예고기간 : 20 . . . ~ . .

□ 협의결과 및 검토의견

○ 협의결과 : (생략·단축 가능/불가로 구분하여 기재)

○ 검토의견
- (서술식으로 작성)

○ 입법예고기간 : 20 . . . ~ . .

[별지 제5호 서식]

자치법규(안) 검토의견서

제 명	

【 주 요 내 용 】

○ (자치법규 입법안의 입법취지 및 주요 내용에 관하여 기술)

【 쟁 점 사 항 】

○ (자치법규 입법안의 법적 쟁점사항에 관하여 기술)

【 검 토 의 견 】

○ (자치법규 입법안에 대한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의 의견을 기재)

[별지 제6호 서식]

년도 제 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서

☐ 심의일시 : (일시) / (장소)

☐ 참석위원 : 총 명 중 명 참석

☐ 심의안건 및 심의내용

순번	안 건 명	심의의결사항				
		원안가결	수정가결	조건부가결	보류	부결
1	인천광역시 연수구 ○○○○ 조례안					
2	인천광역시 연수구 ○○○○ 조례안					
3	인천광역시 연수구 ○○○○ 조례안					
4	인천광역시 연수구 ○○○○ 조례안					
5	인천광역시 연수구 ○○○○ 조례안					

상정된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의결되었음.

심의위원 성명 : _____ 서명 : _____

안 건 심 의 내 용

안 건 명	원 안	수 정 안	조 건 부
인천광역시 연수구 ○○○○ 조례안	□ 가결 □ 수정 □ 조건부 □ 보류 □ 부결	_____을(를) _____으로 수정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 조례안	□ 가결 □ 수정 □ 조건부 □ 보류 □ 부결	_____을(를) _____으로 수정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 조례안	□ 가결 □ 수정 □ 조건부 □ 보류 □ 부결	_____을(를) _____으로 수정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 조례안	□ 가결 □ 수정 □ 조건부 □ 보류 □ 부결	_____을(를) _____으로 수정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 조례안	□ 가결 □ 수정 □ 조건부 □ 보류 □ 부결	_____을(를) _____으로 수정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 조례안	□ 가결 □ 수정 □ 조건부 □ 보류 □ 부결	_____을(를) _____으로 수정한다.	

[별지 제7호 서식]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서식

<순 서>

1. 작성서식

2. 작성방법

3. 입법안

가. 제정안

나. 전부개정안

다. 일부개정안

라. 폐지안

4. 신·구조문 대비표

5. 관계법령 발췌사항

6. 비용추계서

7. 기타 사항

1. 작성서식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년 월 일	20 . . . (제　회)

심의의결사항

(자치법규안 제명)

제 출 자	과장
제출년월일	20 . . .

법무의회담당 심사필

제　　명

1. 의결주문

○

2. 제안이유

○

○

3. 주요내용

○

○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 예산조치 :

○ 협의사항

(1) 규제심사 :

(2) 비용추계 :

(3) 부패영향평가 :

(4) 성별영향평가 :

○ 기　　타 :

(1) 입법예고 (20 .　. 　. ~　. 　.) 결과: 별첨

(2)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개정인 경우)

(3) 비용추계 등 자료: 별첨

2. 작성방법

가. 표지

1) 의안번호 : 연도별 일련번호 (기획감사실에서 기재함)
2) 의결날짜 :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날짜 및 연도별 회차 (기획감사실에서 기재함)
3) 안 건 명 : 20포인트, 바탕체, 진하게 작성함
4) 제 출 자 : 직위와 성명을 기재
5) 제출날짜 : 안건을 기획감사실로 제출한 날짜 기재

나. 본문

1) 의결주문
◦ 자치법규 입법안 제명을 쓰고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로 작성한다.
2) 제안이유
◦ 간결하고 쉬운 문장으로 제정·개폐의 목적을 충분히 기술한다.
◦ 정책의 추진배경(제정, 개정 또는 폐지이유, 정책의 기본방향,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기술하고, 기본적인 개선방향과 이에 따른 기대효과를 서술한다.
3) 주요내용
◦ 의안심의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충실하고 명확하게 기재한다.
◦ 현행내용과 개정내용이 대비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 제정, 개정, 폐지의 목적, 배경, 내용 및 기대효과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 표현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을 △△△으로 변경하여 xxx을 도모함(안 제○○조)
나. ○○○을 하기 위하여 종전의 △△△을 xx으로 변경함(안 제○○조)
다. 종전의 ○○○은 △△△하므로 이를 개선하여 xx하도록 함(안 제○○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예산조치, 실·국·본부간 합의 여부, 규제심사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신·구조문 대비표 및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등의 첨부 사항을 기재한다.
가) 관계법령 : 「○○○법」, 「△△△법」
나) 예산조치 : 예산확보사항 기재(비용추계자료 별첨)
다) 합의사항 : ○○○실(본부・국)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 . . . ~ . . .) 결과 : 별첨
(2)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3) 비용추계 등 자료 : 별첨

3. 입법안

가.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란 -----를 말한다.
2. (이하 생략)

제3조(적용범위) ----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준용)

(중략)

제1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년　월　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나.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경우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준용)

(중략)

제1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년 월 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다.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경우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7호를 삭제한다.

제9조제2항 중 “△△△△”를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를 “××××”로 한다.

제1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
2. ----------.

(중략)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 ----------.

(중략)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 조례를 폐지하는 경우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신·구조문 대비표

가. 서식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나. 용지여백 : 위·아래 15, 왼쪽·오른쪽 21, 머리말·꼬리말 10

다. 작성방법

1) 신·구조문 대비표는 현행란과 개정안란으로 구분한다.

2) 조문을 개정할 때에는 현행란에는 개정대상 현행조문을 기재(항, 호, 목만 개정되는 경우에도 해당 조제목을 포함한 조문 전체를 기재하여야 한다)하고, 개정안란에는 개정된 후의 개정조문을 기재하되, 현행 조문과 같은 부분은 --------의 점선으로 표시한다. 현행란의 개정대상 현행조문부분과 개정안란의 개정조문부분은 밑줄을 쳐서 개정조문의 변동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개정대상 항, 호, 목이 아닌 항, 호, 목의 경우에는 현행란에는 "(생략)"으로 하고 개정안란에는 "(현행과 같음)"으로만 하면 된다.

3) 조, 항, 호, 목 등을 신설할 때에는 현행란에는 "**<신설>**"로 하고, 개정안란에는 신설 조, 항, 호, 목 등을 기재하고 밑줄을 친다.

4) 조, 항, 호, 목 등을 삭제할 때에는 현행란에 삭제대상 조, 항, 호, 목 등을 기재하고 밑줄을 치고, 개정안란에는 "**<삭제>**"로 한다.

5) 현행란의 개정대상 현행조문, 개정안란의 개정조문, <신설>과 <삭제>는 굵은 글씨로 하고 밑줄을 쳐서 변동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5.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발췌사항

☐ (관계법령 제명)

해당 조문 및 내용 기재

<예시>

☐ 도서관법

제28조(업무) 공공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 교육센터로서 수행하여야 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3.25>

1.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자료의 상호대차
6.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및 육성
7.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6. 비용추계서

비 용 추 계 서(제3조제1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

나. 추계 결과

❍

다. 재원조달 방안 (단위: 천원)

년도별 / 재원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	2016
국비					
구비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참조

4. 부대의견 : 해당없음

※ 작 성 요 령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세출의 순증가 또는 세입의 순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을 해당 의안 또는 관계 법령 등의 해당조문과 함께 명시
2) **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를 위하여 필요한 가격기준, 비용추계기간, 그 밖에 비용추계에 사용한 가정이나 방법 등을 명시
3) **추계 결과** :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의 결과 제시
4) **재원조달방안** : 재원분담계획을 포함한 재원조달 방안을 수립하여 제시
5) **연도별 비용추계표** : 연도별 비용을 재정부담주체별, 항목별로 명시
6) **부대의견** : 의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제도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비용추계서의 활용상 한계 등을 제시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2년)	2차년도 (2013년)	3차년도 (2014년)	4차년도 (2015년)	5차년도 (2016년)	계
세 입								
사회복지 인건비								
세 출								
총액인건비								
재원 조달								
의존재원	소 계							
	보조금	국비						
		시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자체수입	지방세 등							
지 방 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7. 기타 사항

가. 시 사전보고 서식(조례, 규칙 해당)

조례(규칙)제정·개폐상황 보고

□ **조례명 :**

제 안 자	구청장 ( ), 의회의원( ), 주민 ( )		
규제개혁위원회	제 회 ('21. .)	규제심사결과	신설, 강화, 폐지, 완화 중 선택
조례규칙심의회	제 회 심의회 ('21. . .)		
의회 의결일	'21. . .	이 송 일	'21. . .
공포 예정일 (공포게시예정일)	'21. . . ('21. . .)	재의요구기한	'21. . .
근 거 법 령	0000법, 0000법 시행령		
소 관 부 서	0000과(담당자 : 000, ☎ 810-0000)		
관련광역행정기관	인천광역시 0000과		
제정·개폐사유	○ ○		
주 요 내 용	○ ○		
검 토 의 견			

나. 의회 상정 서식(조례만 해당)

인천광역시 연수구 0000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일자 2021. .
제 출 자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1. 제안이유

○
○

2. 주요내용

○
○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예산조치 :
다. 합의부서 :
라. 기 타
- 입법예고 결과
-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별지 제8호 서식]

제　　회 조례규칙심의회 의안목록

※ 총　　건 (조례안　건, 규칙안　건, 훈령안 건, 예규안,　건, 기타안건　건)

.　　.　　.(　　)　: 00

순번	의안번호	제출부서	의　　안　　명	비고

◉ 작성요령

① 의안번호는 간사가 접수한 순번대로 등재 · 부여

② 목록기재순서는 조례안, 규칙안, 기타안건 순으로 등재하고 등재순서에 따라 심의 · 동급의 의안에 대하여는 의안별 주관부서 직제 순으로 등재하고 심의

[별지 제9호 서식]

법령해석요청서

1. 질의요지

(질의요지는 명확하고 간결하게 작성하며, 질의요지가 둘 이상인 경우 가, 나 등으로 나누어 작성)

2. 해석대상 법령조문 및 관련 법령

가. 해석대상 법령조문

나. 관련 법령

3.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가. 갑설

나. 을설

4. 해석요청기관의 의견

5. 질의에 관련된 법령 발췌문

6. 기타 참고자료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례, 법률자문결과 등 관련 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

[별지 제10호 서식]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검토 결과 통보서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제출일자
제출의견	
주관부서 및 검토자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규칙명	(현행 규칙이 있을 경우 기재)
관련 법령 및 조례	
검토의견 ※ 분량이 많은 경우 별지 사용	수용여부/사유 등 작성

「지방자치법」 제20조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14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11호 서식]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관리대장

(20　　)년도

연번	접수일자	의견제출인			의견 제출 내용		소관 부서	보완요구일 (보완기간)	이송일자 (이송기관)	수리 여부	의결 및 공포·시행	
		대표자		총수 (명)	주요 내용	구분					의결일자	공포일자 (시행일자)
		성 명	주 소									
1					◦ 규칙명 : ◦ 의견내용 :	제정(　) 개정(　) 폐지(　)				수리(　) 일부수리(　) 불수리(　)		
2												

※ 대표자는 최대 3명까지 이고, 구분 및 수리여부 란에는 해당 사항에 ∨표시

인천광역시 연수구 훈령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행정규칙”이란 법령·조례의 시행이나 행정사무처리 등과 관련하여 발령하는 구의 훈령과 예규를 말한다.
3. “주관부서의 장”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부서 및 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2장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의 정비

제4조(정비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 ① 법제업무담당 부서장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매년 초 자치법규 정비추진계획(이하 이 조에서 “정비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각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정비추진계획에 따라 소관 자치법규를 제정·개정·폐지(이하 “정비”라 한다)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정비해야 할 경우는 예외로 하며, 추가·변경 사항이 있는지 수시로 살펴야 한다.

③ 법제업무담당 부서장은 수립한 정비추진계획에 따라 정비가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④ 법제업무담당 부서장은 제1항의 정비추진계획에 행정규칙의 정비를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입법안의 작성) ①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4조에 따라 작성하며, 별표 1의 자치법규 입안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입안형식 및 정비요령 등은 법제처의 「법령입안 심사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준용한다.

제6조(정비 추진절차) ① 주관부서의 장은 별표 2의 순서에 따라 자치법규 입법안의 정비 추진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행정규칙 입법안의 정비 추진절차는 규칙 입법안의 정비 추진절차를 준용한다.

제4장 보고

제17조(사전보고) ① 법제업무담당 부서장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서 의

결되어 이송된 조례공포안을 이송일부터 5일 이내에 인천광역시장에게 사전보고 하여야 한다.

② 법제업무담당 부서장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규칙안을 인천광역시장에게 공포 예정 15일 전에 사전보고 하여야 한다.

제19조(재의 및 제소결과 보고)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주관부서의 장은 재의요구 사실 및 재의결 결과를 지체 없이 법제업무담당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주관부서의 장은 재의결된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법제업무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으며, 대법원에 제소한 때 및 판결이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법제업무담당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공포 및 발령 등

제20조(공포 및 발령) ① 자치법규를 공포하고자 할 때에는 자치법규 공포번호 부여대장에 등재하고 조례·규칙별로 누년일련번호를 부여한다.

② 행정규칙을 발령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규칙 발령번호 부여대장에 등재하고, 훈령·예규별로 누년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제21조(원본 관리) ① 자치법규의 원본은 조례·규칙별, 공포 순서별로 편철하여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② 행정규칙의 원본은 자치법규의 원본에 준하여 법제담당부서에서 관리하되, 훈령·예규별 발령 순서별로 편철하여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22조(번호 부여대장 관리) ① 자치법규 공포번호 부여대장은 조례·규칙별로 구분하여 관리하되, 연도별로 분리하여 편철하지 아니한다.

② 행정규칙 발령번호 부여대장은 훈령·예규별로 구분하여 관리하되, 연도별로 분리하여 편철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포 및 발령번호 부여대장은 법제담당부서에서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23조(자치법규집 등의 관리)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자치법규집 및 행정규칙집은 전자법규집으로 관리하며, 공포 또는 발령일에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자치법규 입안기준(제5조제1항 관련)

입안기준	주요 내용
입법 필요성	□ 주민의 요구,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의 제·개정, 주요업무계획 추진 등에 따른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가 필요한지 여부
입법형식의 적절성	□ 법령에서 위임 또는 법령에 따라 반드시 정하여야 하거나 직권에 의한 입법의 경우에 조례 또는 규칙의 자치법규 형식은 적정한지 여부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	□ 헌법의 기본정신인 비례의 원칙(기본권 제한의 한계),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조세법률주의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 □ 집행기관·의결기관 간 권한분리 및 배분원칙 등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 상위 법령 및 자치법규에 모순되거나 저촉되지 않는지 여부
입법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	□ 다른 자치법규와 조화와 균형, 자치법규 상호간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은 없는지 여부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	□ 입법내용의 의미가 확실하게 이해될 수 있고 입법의도가 오해되지 않도록 간결하고 정확하게 표현되었는지 여부 □ 누구나 알기 쉬운 용어로 한글 맞춤법 등 어문규범을 준수하고 전체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조문을 배열하였는지 여부

[별표 2]

자치법규 입법안 정비절차(제6조제1항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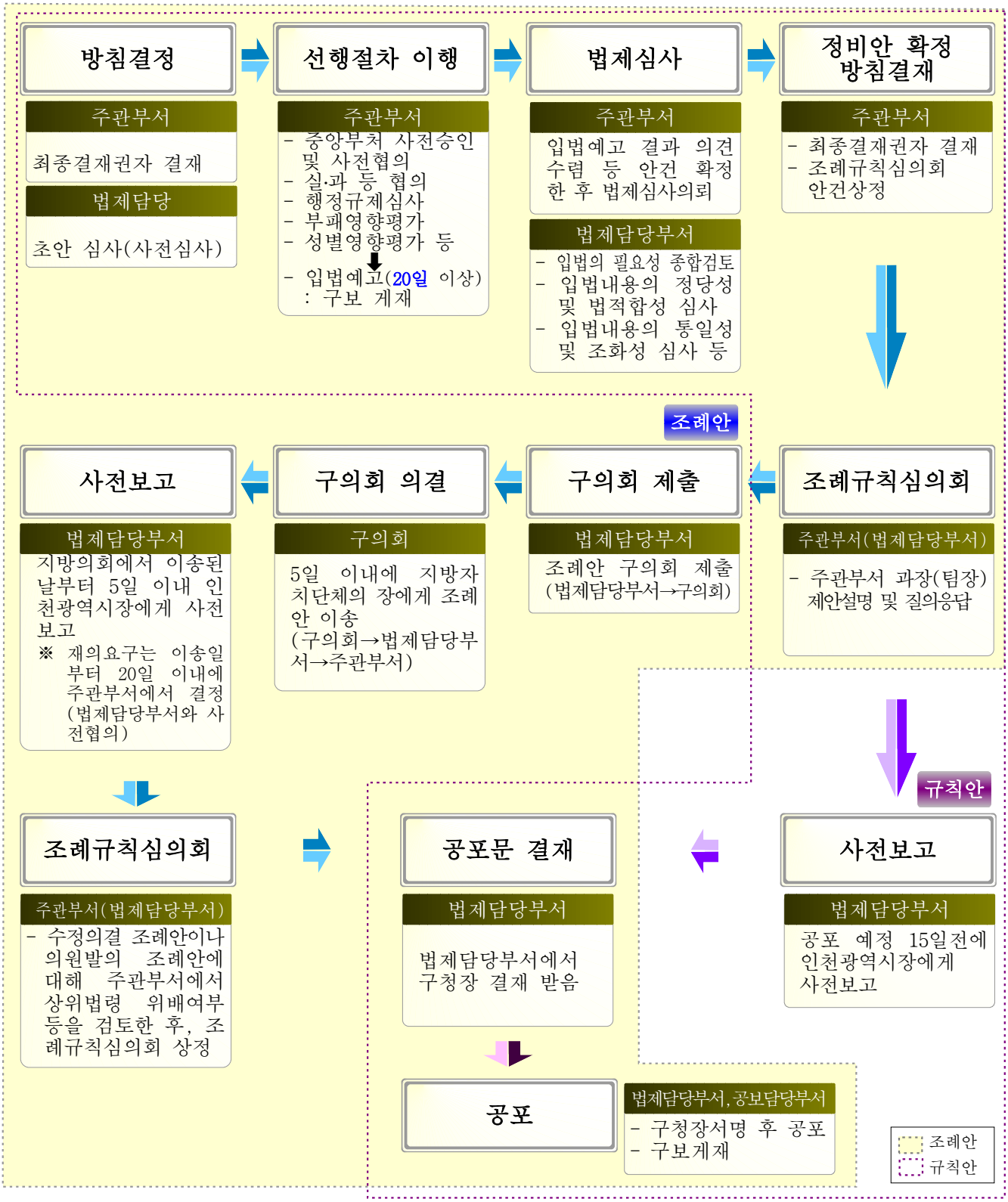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시 제2021-122호

도시계획시설(도로:중2-651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도시계획시설(도로:중2-651호선)사업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연수구청(도시계획과, ☎ 032-749-8653)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1. 12. 27.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변경 없음)

○ 위 치 : 연수구 동춘동 913-3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 없음)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중2-651호선) 사업

○ 명 칭 : 동춘동 913-32번지 일원(중2-651호선) 도로개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변경 없음)

규모			폭원(m)	연장(m)		기능	기점	종점
등급	류별	번호		전체	금회			
중로	2	651	15	684	149	집산	광2-3	중1-295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변경 없음)

○ 성 명 : 동춘1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3동 577-5번지

5. 사업의 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변경)

○ 기정 : 실시계획인가일 ~ 2021. 12. 31

○ 변경 : 실시계획인가일 ~ 2022.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변경 없음)

○ 「붙임」 참조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변경 없음)

소재지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무상귀속 면적(㎡)	비 고
주소	지번			도로내	도로외		
동춘동	913-32	잡종지	2,242	2,242	-	2,242	

용지조서(변경 없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외의 권리		비고
					성 명	주 소	근저당권 지상권자	주 소	
1	동춘동	913-32	잡종지	2,242	동춘일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	인천광역 연수구 새말로 141 5층			

지장물조서(변경 없음)

연번	구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표시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의표시		면 적	수량 및 편입면적	단위	소유자		비 고
		소재지	지 번	지 목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성 명	주 소	
1	물건	동춘동	913-32	잡	주식회사 동*****	영업보상		1	식	주식회사 동*****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	
					창고1	철파이프조 천막 차광막 씌움 (수은등포함)	292	71.00	㎡			
					창고2	철파이프조천막5동 (6*3)*5ea		90.00	㎡			
					차양	철파이프조천막 (1.5*2.0)		1	식			
					울타리1	메쉬휀스 H1.5*48m		1	식			
					울타리2	철파이프조그물망 H3*15m		1	식			
					바닥포장1	콘크리트 11*15		165.00	㎡			
					바닥포장2	철재 (2.5*6)*1개 (1.5*3)*1개		1	식			
					영업집기품등	플라스틱 팔레트 약 1500pcs, 플라스틱 의자 ,cctv,냉풍기등 영업집기품 일체		1	식			
1-1	물건	동춘동	913-32	잡	코*	영업보상		1	식	김*자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번길 **	

연번	구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표시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의표시		면 적	수량및 편입면적	단위	소유자		비 고
		소재지	지 번	지 목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성 명	주 소	
2	물건	동춘동	913-32	잡	주식회사 신***	영업보상		1	식	주식회사 신***	인천광역시 연수구 ***로 ***	
					사무실겸식당 (1층)	컨테이너 (전기,상수,오수시설포함)		39.00	㎡			
					사무실2(1층)	컨테이너 (전기시설포함) 3*6		18.00	㎡			
					사무실3(2층)	컨테이너 (전기시설포함) 3*6		18.00	㎡			
					사무실4(2층)	H빔조샌드위치판넬 (전기시설포함) 5.4*3		16.20	㎡			
					창고(전실포함) 및 화장실겸 주방	H빔조샌드위치판넬 (전기,상수,오수,정화조 시설포함)		24.00	㎡			
					창고2(2층)	컨테이너함석지붕씌움 (전기시설,등포함) 3*9		27.00	㎡			
					창고3	철파이프조함석천막씌움 (전기시설포함)		154.00	㎡			
					창고4	철재 (전기시설포함) 5*3		15.00	㎡			

연번	구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표시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의표시		면 적	수량및 편입면적	단위	소유자		비 고
		소재지	지 번	지 목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성 명	주 소	
2					전실	철파이프조아크릴천막 2.5*1.5		3.75	㎡			
					대문	철재접이식 (함석간판포함0.8*1.3) (H6*4W)*2짝		1	식			
					난간1(2층)	철재 1*10		10.00	㎡			
					난간2(2층)	철재 1*5.5		5.50	㎡			
					난간3(2층)	철재 1.3*5.4		7.02	㎡			
					계단1	철재 H2.5*W0.8		1	식			
					계단2	철재 H3*W3.7		1	식			
					차양1	철파이프조천막 1.2*1		1	식			
					차양2	철파이프조함석 1.3*5.4		1	식			
					울타리1	메쉬휀스 H1.5*43m		1	식			
					울타리2	함석 H1.5*15m		1	식			
					울타리3	함석 H3*12m		1	식			
					계근대	50톤		1	식			
					전기인입시설	공업용(380V)		1	식			
					바닥포장1	콘크리트 (16.8*43)-(39+3.7 5+18+24+154+15)		1	식			

연번	구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표시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의표시		면 적	수량및 편입면적	단위	소유자		비 고
		소재지	지 번	지 목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성 명	주 소	
2					바닥포장2	철판 (1.2*2.5)*40EA		1	식			
					영업설비등	물탱크 3,000리터*1개 500리터*1개 400리터*1개 철재유류탱크 1,000리터*1개 등영업설비일체		1	식			
					영업집기품등	공구함 및 공구대(앵글조), 공구,산소통,용접기,책상,쇼파,금고,에어컨,파티션,침대,의자,CCTV,냉장고,전자레인지,식탁,사무기기,TV,당구대 등 영업집기품 일체		1	식			
					영업자재등	고철 50톤		1	식			
3	물건	동춘동	913-32	잡	폐********** 주식회사	영업보상		1	식	폐********** 주식회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로 ***번길 ***	
					사무실	컨테이너 (전기시설포함)		17.00	㎡			
					창고	카고 (전기시설포함) 2*4		8.00	㎡			
					전실	철파이프조천막 1*1.5		1.50	㎡			
					차양	함석 6*4.5		1	식			

연번	구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표시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의표시		면 적	수량및 편입면적	단위	소유자		비 고
		소재지	지 번	지 목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성 명	주 소	
3					이동식 화장실	FRP 1*1		1	식			
					울타리1	철파이프조함석 H3*81m		1	식			
					울타리2	철파이프조함석 H3*3.3m		1	식			
					계근대	50톤		1	식			
					전기인입시설	일반(220V,10KW)		1	식			
					방통	철재 (2*3)*3개		1	식			
					바닥포장	콘크리트 (12*9.7)+(29.4*11.8)+(11.8+12)*10.6*1/2		589.46	㎡			
					영업집기품등	폐기물 및 처리용기,드럼통, CCTV, 책상,의자,콤프레샤,드럼통등 영업집기품 일체		1	식			
4	물건	동춘동	913-32	잡	보****주식회사	영업보상		1	식	보****주식회사	서울특별시 마포구 ***로 **	
					담장	철빔조강판 (잔여담장이전및보수비포함) H3*5m		1	식			913-2 연접
					영업집기품등	고철등 일체		1	식			913-2 연접
5	물건	동춘동	913-32	잡	미*****	영업보상		1	식	배*규	인천광역시 연수구 ****로 **번길 ***	

연번	구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표시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의표시		면 적	수량및 편입면적	단위	소유자		비 고
		소재지	지 번	지 목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성 명	주 소	
5					울타리	철파이프조함석 H3*50m		1	식			913-25 연접
					영업집기품등	CCTV,등,고철등 일체		1	식			913-25 연접
6	물건	동춘동	913-32	잡	창고	컨테이너 (샌드위치판넬씌움,전기시설포함) 잔여창고이전및보수비 포함.	18	13.00	㎡	유*홍	인천광역시 연수구 ***로 ***-**	914 연접
					차양	철파이프조샌드위치 판넬천막씌움 1*2		1	식			914 연접
					영업집기품등	철파이조앵글 다이,각종 부품등 일체		1	식			914 연접
7	물건	동춘동	913-32	잡	상차장	철파이프조함석및천막 지붕씌움 잔여상차장이전및보수 비포함.	187	5.00	㎡	주식회사동******* *	경기도 성남시 **구 희** ***번길 *	913-1 913-23 연접
					휴게실	컨테이너 (전기및상수,오수시설, 집기품일체등포함) 잔여휴게실이전및보수 비포함.		1	식			913-23 연접
					도색장	샌드위치판넬및철파이 프(전기시설포함) 잔여도색장이전및보수 비포함.	88	3.00	㎡			913-23 연접

연번	구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표시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의표시		면 적	수량및 편입면적	단위	소유자		비 고
		소재지	지 번	지 목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성 명	주 소	
7					창고1	카고창고 (전기시설포함) (3.5*2)		2	개			913-1 913-23 연접
					창고2	카고 (전기시설포함) 잔여창고이전및보수비 포함.	9	3.00	㎡			913-1 913-23 연접
					화장실1	컨테이너 (전기,상수,오수,정화조 시설포함) 잔여화장실이전및보수 비포함.	7.2	2.00	㎡			913-1 913-23 연접
					세면장	컨테이너 (전기및상수,오수,정화 조시설포함) 잔여화장실이전및보수 비포함.		1	식			913-23 연접
					차양	목조천막씌움 3*4		1	식			913-1 913-23 연접
					전기인입시설	배전판등 일체		1	식			913-1 913-23 연접

연번	구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표시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의표시		면 적	수량및 편입면적	단위	소유자		비 고
		소재지	지 번	지 목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성 명	주 소	
7					영업집기품등	CCTV,등,정수기,냉장고,캐비닛,쇼링장비,매트리스,수레,자전거,끈,공구,점프선 등 일체		1	식			913-1 913-23 연접
8	물건	동춘동	913-32	잡	사무실	컨테이너3*6 (전기시설포함) 잔여사무실이전및보수비포함.		1	식	전*기	경기도 시흥시 **로 ***	913-1 연접
					화장실	이동식화장실 FRP		1	식			913-1 연접
					상수도시설	동파방지 전기열선 등 포함 (SUS 싱크대 포함)		1	식			913-1 연접
					바닥포장	콘크리트 0.5*10.5		5.25	㎡			913-1 연접
					영업집기품등	마대자루, 캡스 보안시설 등 자제 일체		1	식			913-1 연접
9	물건	동춘동	913-32	잡	담장	함석울타리 H3*24m		24.00	m	고*식	인천 연수구 해돋이로***, *동****호	913-24 연접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시 제2021-125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연수구 건설과(☎749-8523) 및 도시계획과(☎749-8653)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여드립니다.

2021. 12. 27.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 도시계획시설(도로:중2-350호선)

1. 사업시행지의 위치 (변경 없음)

○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90-5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 없음)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중2-350호선) 사업

○ 명 칭 : 청학동 중로2-350호선 도로개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변경 없음)

○ 아스콘포장 405㎡(연장 L=28m, 폭원 B=18m)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변경 없음)

○ 성 명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5. 사업의 착공 및 준공예정일 (변경)

○ 기정 : 실시계획인가일 ~ 2021.12

○ 변경 : 실시계획인가일 ~ 2023.12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변경 없음)

○ 「붙임」 참조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해당없음

용지조서(변경 없음)

일련번호	동명	지 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공부	편입	잔여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1	청학동	91-14	도	33	33	-		인천광역시				
2	청학동	91-15	도	4	4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3	청학동	444	도	493	79	414		국토교통부				
4	청학동	86-10	도	29	29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5	청학동	85-3	철	360	1	359		국토교통부				
6	청학동	90-5	철	2,482	274	2,208		국토교통부				
7	청학동	117-1	철	136	28	108		국토교통부				
8	청학동	117-4	도	4,142	81	4,061		인천광역시				
합 계				**7,679**	**529**	**7,150**						

□ 도시계획시설(도로:소2-11호선)

1. 사업시행지의 위치 (변경 없음)

○ 위 치 : 연수구 청학동 524-2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 없음)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소2-11호선) 사업

○ 명 칭 : 청학동 소로2-11호선 도로개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변경 없음)

○ 아스콘포장 183㎡(연장 L=36m, 폭원 B=8m)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변경 없음)

○ 성 명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5. 사업의 착공 및 준공예정일 (변경)

○ 기정 : 실시계획인가일 ~ 2021.12

○ 변경 : 실시계획인가일 ~ 2023.12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변경 없음)

○ 「붙임」 참조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해당없음

용지조서(변경 없음)

일련번호	동명	지 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공부	편입	잔여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1	청학동	524-21	잡	1,173.5	55	1,118.5		인천광역시				
2	청학동	524-22	철	8.4	8.4	-		인천광역시				
3	청학동	63-8	도	28	13	15		인천광역시				
4	청학동	62-6	잡	24	5	19		국토교통부				
5	청학동	63-15	도	21	16	5		인천광역시				
6	청학동	62-11	잡	60	14	46		국토교통부				
7	청학동	431-20	구	437	101	336		국토교통부				
8	청학동	63-4	철	241	20	221		국토교통부				
9	청학동	62-2	철	69	35	34		국토교통부				
10	청학동	444-8	도	286	27	259		국토교통부				
11	청학동	445	도	423	6	417		국토교통부				
12	청학동	92	도	3,901	11	3,890		인천광역시				
합 계				**6,671.9**	**311.4**	**6,360.5**						

□ 도시계획시설(도로:소2-23호선)

1. 사업 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3-6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명 칭 : 청학동 소로2-23호선 도로개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없음)

○ 아스콘포장 198㎡ (연장 L=35m, 폭원 B=6.5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 명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기정 : 실시계획인가일 ~ 2021.12

○ 변경 : 실시계획인가일 ~ 2023.12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 「붙임」 참조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 해당없음

용 지 조 서(변경 없음)

고시 일련 번호	동 명	지 번	지 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잔 여 (㎡)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청학동	3-6	도	5,972	40	5,932		인천광역시			
2	청학동	431-32	도	102	45	57		국토교통부			
3	청학동	8-17	잡	56	48	8	최**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	**** ****	경기도 부천시 **구 **로 7*0 (**동)	
4	청학동	산31-6	임	117	89	28		산림청			
합 계				6,247	222	6,025					

지 장 물 조 서(변경 없음)

조서 번호	소재지	편입 토지	물건의 종류	구 조	단위	수량	물건소유자		토지소유자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연수구 청학동	431-32	담장	목재(H=1.2m)	m	4.8	유**	연수구 청학동 *-**		국토교통부
			담장	블록(H=1.4m)	m	4.0				
			자연석쌓기	(H=1.1)	㎡	5.0				
2	연수구 청학동	3-6	창고	스라브(1.3×1.2)	동	1	신**	연수구 청학동 *-***		인천광역시
			화장실	스라브(1.7×1.6)	동	1				
			가설물창고	천막(2.0×4.5)	동	1				
			수목	감나무(직경30)	주	1				
			담장	블록(H=1.5m)	m	9.0				
			담장	벽돈(H=1.3m)	m	3.5				
3	연수구 청학동	산31-6	가건물	양철스레트(5.7×3.7)	㎡	2.6	유**	연수구 청학동 *-**		산림청

□ 도시계획시설(도로:소3-41호선)

1. 사업 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568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명 칭 : 옥련동 소로3-41 도로개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없음)

○ 아스콘포장 44㎡ (연장 L=11m, 폭원 B=4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 명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기정 : 실시계획인가일 ~ 2021.12

○ 변경 : 실시계획인가일 ~ 2023.12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번호	동 명	지 번	지 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잔 여(㎡)	소 유 자
1	옥련동	568	도	391.5	39.7	351.8	인천광역시
계				**391.5**	**39.7**	**351.8**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 해당없음